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919호)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3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7. 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5. 7. 14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기금결산보고서
-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보고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 감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의회의원을 대표위원으로한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5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감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세입결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 현액은 3,472억 3,909만 3천원이지만 3,537억 4,784만 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3,499억 1,134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가 징수 되었으며, 미수납 (결손처분 제외)은 35억 3,420만 7천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3,457억 6,973만 3천원이며, 수납액은 3,422억 2,023만원이고 미수납액(결손처분 제외)은 32억 4,723만 9천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7개 분야의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79억 7,808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76억 9,111만 5천원이고, 미수납액 2억 8,696만 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대부분이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180억 8,896만 6천원중 징수는 163억 6,922만 3천원으로 징수율은 90.5%로 전년도보다 0.7% 낮았으나, 체납액은 14억 3,77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이고,
-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862억 6,763만 2천원으로 징수액은 1,844억 3,787만 1천원으로 징수율은 99.0%이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18억 94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669만 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원인은 자동차등록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이월액이 증가된 것이므로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징수,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04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72억 3,909만 3천원에서 지출액은 2,569억 9,281만 7천원으로 집행율은 74.0%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70억 8,810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이 231억 5,817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예산현액 3,391억 4,256만 1천원의 74.5%인 2,258억 770만 7천원이 집행되고 667억 6,659만 9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95억 6,825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0억 9,653만 2천원의 51.7%인 41억 8,511만원이 집행되고, 3억 2,150만 2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고, 35억 8,9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2004년도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3,472억 3,909만 3천원의 19.3%인 670억 8,810만 1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또한 예산현액의 6.7%인 231억 5,817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각각 과다 발생되었음을 볼 때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 국·도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등의 사유도 있지만 당초 계획수립시 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부진한 사업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집행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이를 조정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투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재원의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집행부의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 집행은 고성군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이고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128억 4,148만 2천원으로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 영향조사용역 외 1건에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090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고성군의회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외 175건으로 670억 8,810만 1천원이고, 현재 설치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6종으로 2003년도말 이월액은 18억 3,657만 7천원이며 수납액은 2억 4,790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6,920만원으로 2004년말 현재액은 20억 1,528만 6천원입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3종으로 2003년도말 이월액 25억 2,512만 6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5,420만 4천원이 발생하고 5억 7,399만 1천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21억 534만원으로 4억 1,978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우리군이 갇아야 할 채무는 2003년말 현재액 275억 9,999만 2천원보다 15억 7,605만 8천원이 감소하여 2004년말 현재액은 260억 2,393만 4천원이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8,193필지에 698억 9,262만 6천원, 건물 167동에 38억 7,508만 9천원, 선박 2척에 4억 9,050만 7천원으로 총 742억 5,822만 3천원으로 전년도 692억 6,823만 3천원보다 49억 8,9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2004년말 물품현황은 1,140건에 34억 4,430만 2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억 1,879만 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8억 2,005만 9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 취득 및 처분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본 결산승인안은 2004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04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에서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5. 7. 1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